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1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9. 1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98. 9. 1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가. 제안이유

-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에 대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조례에 반영

나.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 확대(안 제12조제2호)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경감

- 소값 안정을 위한 도축세 감면(안 제24조의 2)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지방세 감면폭을 확대할 경우 혜택받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할 경우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 자가 소비용이 시중에 판매되어 유통될 경우 조치는? ○ 우리 시민 조례를 개정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약 7,000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나,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했을 경우 증가하는 세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신고입니다. ○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합니다.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1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조례에 반영

□ 주요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 확대(안 제12조제2호)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던 것을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경감

○ 소값 안정을 위한 도축세 감면(안 제24조의2)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생략)</p> <p>1. (생략)</p> <p>2. 전용면적 <u>60제곱미터 이하인</u>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생략)</p> <p><u><신설></u></p>	<p>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85제곱미터 이하인</u></p> <p>3.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p>